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2019. 4.



금융감독원

목 차

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개요	1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의미	1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주요 심사기준	2
I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3
1. 신청 단계	4
2. 심사 단계	5
3. 지정 단계	7
III.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8
1. 서비스의 지역	8
2. 서비스의 혁신성	9
3. 소비자의 편익	10
4.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11
5.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12
6.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13
7.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15
8.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18
9.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19
< 참고 1 > 신청서 양식	20
< 참고 2 > 예상 Q&A	27
< 참고 3 > 관련 법규	31

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이하 “법”

②「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③「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④「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하 “세칙”

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개요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의미

① 혁신금융서비스 및 혁신금융사업자

- **혁신금융서비스** :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법 §2iv)

* ①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2①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 ②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2ii)

- **혁신금융사업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법 §2v)

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의의**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정기간**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법 §17①)

* **특례인정 대상규제** : ①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②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③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관련법령(他부처 소관법령의 규제특례에 앞서 **해당부처의 동의**가 필요)

** 금융관련법령 **개정**에 앞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주어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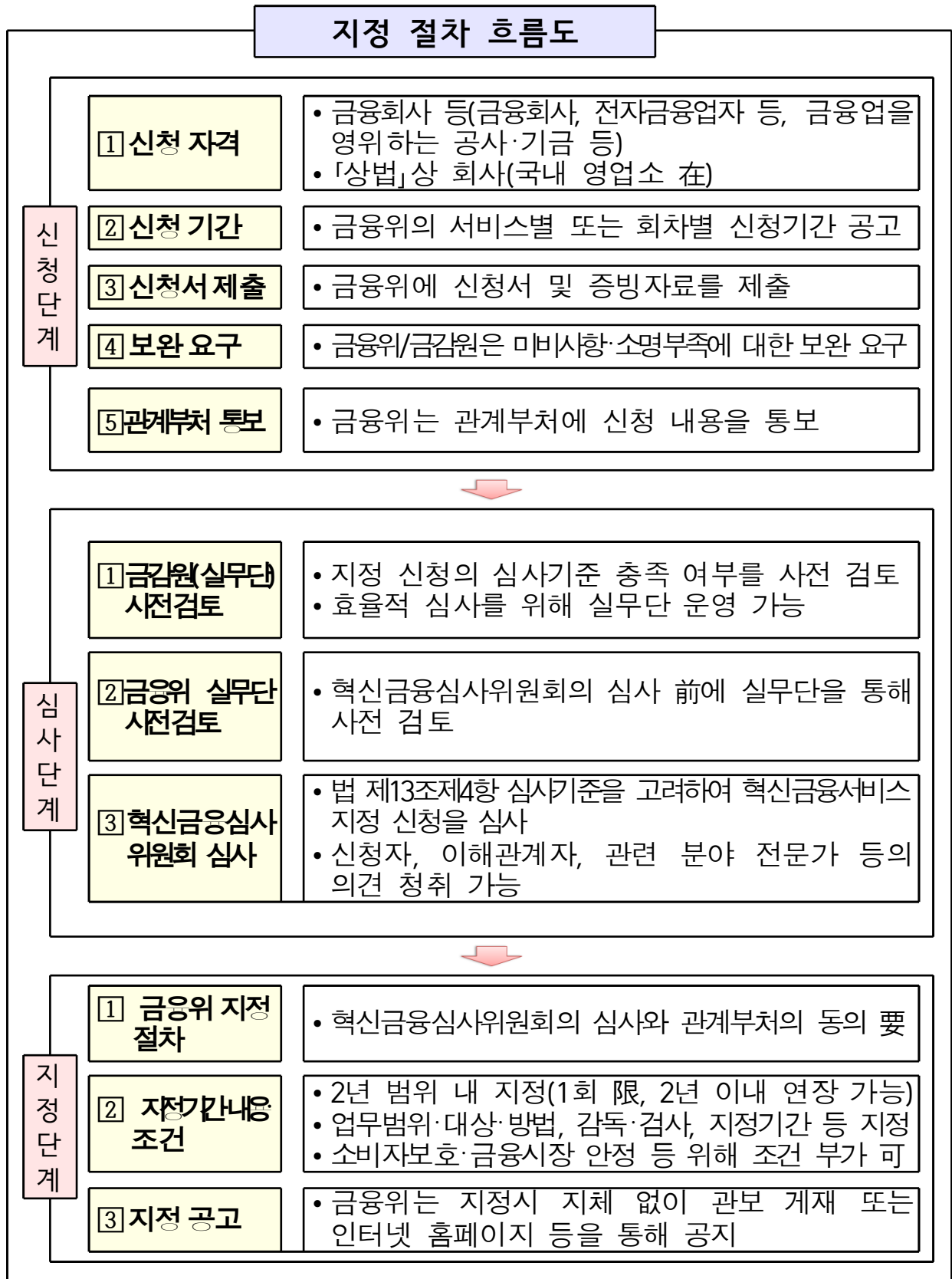
- 다만, 소비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 예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가 불가**(법 §17②)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주요 심사기준(요약)

구분	주요 심사기준	근거법규
① 서비스의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13④ii
② 소비자 편익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13④iii
③ 규제 특례의 불가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13④iv
④ 업무영위의 자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13④v
⑤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13④vii 규정 §4
⑥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13④viii

I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1

신청 단계

① 신청 자격(법 §2iii, §5①, 영 §4)

- **금융회사 등** : ①금융회사, ②전자금융업자 등, ③금융업 영위
공사·기금 등
 - 금융회사 : 은행,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법인
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전자금융업자 등 :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 금융업 영위 공사·기금 등 :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
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 주택금융공사, 금융관련법령상 협회 등
- **「상법」상 회사**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② 신청 기간(법 §5②)

- 금융위가 공고한 금융서비스별 또는 회차별 신청기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수시 신청 방식이 아님)

③ 신청서 제출(법 §5③, 규정 §3, 세칙 §2, 별지 1)

- 신청자는 금감원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④ 신청서 보완 요구(법 §5④, §31, 영 §10, 별표 1)

- 금융위 또는 금감원은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동 요구에 따라야 함

⑤ 관계부처 통보(법 §5⑤)

- 금융위는 관계부처에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검토 결과를 30일내 금융위에 문서로 회신

2

심사 단계

① 금감원(실무단)의 사전 검토(법 §13④, §31, 영 §10, 별표 1, 규정 §11, 세칙 §3)

- 금감원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에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심사기준(법 §13④)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필요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실시)
- 금감원은 혁신금융심사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심사위 실무단***을 운영

* 구성 : 감독총괄국장, 핀테크혁신실장, 심사 관련 부서장(대리 출석可)
개최 : 핀테크혁신실장이 혁신금융심사위 실무단 회의를 개최

② 금융위 실무단의 사전 검토(규정 §11)

-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심사위 실무단**을 운영

③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법 §5⑤, §13~§15, 영 §5, 규정 §9)

- **목적**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혁신금융심사위**”를 설치

- **구성** :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위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전문가(각분야 1인 이상 포함),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長(총 25인 이내)
- **심사기간** : 원칙적으로 신청서 등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나,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 최초기간(30일)에는 신청서 보완기간이 산입되지 않음
 - ** 연장 이후 심사기간에는 신청서 보완기간이 산입
- 1차 연장(최대 2회, 최장 60일)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2차 연장(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을 통해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구분	최초기간	연장기간	
원칙	30일		
	(보완기간 未산입)		
1차 연장	30일	60일	
	< 최대 90일(보완기간 산입) >		
2차 연장	30일	60일	30일
	< 최대 120일(보완기간 산입) >		

- **관계부처 통보** : 혁신금융심사위는 관계부처에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검토 결과를 30일내 혁신금융심사위에 문서로 회신
- **의견청취** : 혁신금융심사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신청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서면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
- **소위원회** : 혁신금융심사위는 안건의 효율적 검토, 예산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
- **전문가 지원단** : 혁신금융심사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 * 법률분야,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이 위촉

3

지정 단계

① 지정 절차(법 §4①)

- 금융위는 ①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와 ②관계부처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관계부처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 부처의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특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

② 지정기간, 지정내용, 지정조건(법 §4①~③, §10)

- **지정기간** : 2년 범위 이내(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 **지정내용** : 업무 범위(서비스 종류, 내용 등), 업무 대상(서비스 이용자 범위 등), 업무 방법, 감독·검사, 규제특례, 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지정조건**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

③ 지정 공고(법 §6)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지체 없이 관보 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

Ⅲ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1 서비스의 지역

① 심사 기준(법 §13④i)

-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

※ 해당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해외 금융시장에서 주로 제공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해당 금융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인지 여부
- ② 해당 금융서비스의 내용이 금융혁신법의 목적(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도모 등)에 부합한지 여부
- ③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법령,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의 명령·지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서비스의 지역	.해당 금융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인지	.신청서상 이용자 범위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의 내용이 금융혁신법의 목적(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도모 등)에 부합하는지	.신청서상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과 금융혁신법 목적 간 관계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법령,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의 명령·지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국내 법령 등 준수를 서약하는 각서

2

서비스의 혁신성

① 심사 기준(법 §13④ii)

-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일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성이 없고, 실질적인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획기적으로 차별된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② 해당 금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서비스의 혁신성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성이 없고, 실질적인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서
	.해당 금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신청서상 서비스의 잠재력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3

소비자의 편익

① 심사 기준(법 §13④iii)

-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할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간편성·신속성 향상 등 **효율성 제고**로 금융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 ②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대비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해 증가하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가급적이면 계량적으로 기재토록 신청자에게 안내할 필요

- ③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촉진**에 기여하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소비자의 편익	.간편성·신속성 향상 등 효율성 제고로 금융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신청서상 업무방법과 해당 금융서비스의 품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대비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지	.신청서상 해당 금융서비스의 추정 비용과 추정 수익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촉진에 기여하는지	.신청서상 경쟁 촉진 효과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① 심사 기준(법 §13④iv)

-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신청자가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규제에 따르면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등)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지 여부
- ② 신청자가 상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앞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동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③ 해당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될 경우, 특례 대상이 아닌 다른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규제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 불가 또는 과도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지	.신청서상 현행 규제상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청서상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내 금융소비자에 대한 테스트 필요 사유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규제특례 적용시, 특례 이외 他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가 초래하는지	.신청서상 타규제의 회피·우회 결과 未초래 내용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① 심사 기준(법 §13④v)

-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해당 금융서비스의 영위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② 해당 금융서비스의 범위, 규모 및 업무방법에 부합하는 영업시설과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③ 사업계획에 비추어 신청 당시 확보한 자금 규모 및 추후 자금 확보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
- ④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협력관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등에 그 준비상황 및 향후 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해당 금융서비스 출시까지의 예상 소요기간 및 월별 준비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해당 금융서비스의 영위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신청서상 인력확보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의 범위 등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신청서상 관련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당시 확보자금 규모 및 추후 자금 확보 계획이 현실적인지	.신청서상 확보자금규모·추후 자금확보계획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시 금융회사와 협력관계 구축 필요시 그 준비상황 및 향후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서상 금융회사와 협력관계 구축 관련 준비상황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정 이후 해당 서비스 출시까지의 소요 예상기간과 월별 준비 계획이 적정한지	.신청서상 서비스 출시 소요 예상기간, 월별 준비계획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6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① 심사 기준(법 §13④vi)

-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해당 금융서비스의 지역 범위, 이용자 범위, 거래금액 범위 (개별 서비스별·이용자별 금액, 총 거래금액 등) 등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지 여부
- ② 해당 금융서비스의 영업개시 시기, 내용·방식·형태, 절차(서비스의 개발-판매-사후 관리 등) 등 업무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지 여부
- ③ 경영전략이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고,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되며, 관련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 ④ 추정재무제표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
- ⑤ 사업계획이 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서비스 범위,	해당 금융서비스의 지역 범위, 이용자 범위, 거래금액 범위 등이 구체적인지	신청서상 서비스 범위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p>.해당 금융서비스의 영업개시 시기, 내용·방식·형태, 절차 등 업무방법이 구체적인지</p>	<p>.신청서상 업무방법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p>
	<p>.경영전략이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마련되고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로 추정되며 관련 시장 상황에 비추어 타당한지</p>	<p>.신청서상 사업계획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p>
	<p>.추정재무제표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p>	<p>.신청서상 추정 재무상황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p> <p>*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등</p>
	<p>.사업계획이 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p>	<p>.신청서상 사업계획상 규제특례 未적용 금융관련법령 준수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p>

① 심사 기준(법 §13④vii)

< 아래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할 것 >

①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②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법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법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분쟁 처리 및 조정 신청절차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등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용자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⑤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⑥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⑦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 ⑧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지정기간 중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의 수, 건별 거래금액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지정기간 중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위험 고지의 내용 및 방법, 위험고지 후 이용자로부터의 동의 수령 내용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③ 금융혁신법령(법 §28, 영 §9)상 이용자등과의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④ 지정기간 중 발생 가능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⑤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또는 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배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3]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지정기간 중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의 수, 건별 거래 금액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을 합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신청서상 이용자의 범위 등 거래 제한 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정기간 중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위험고지의 내용 및 방법, 위험고지 후 이용자로부터의 동의 수령 내용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신청서상 위험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금융혁신법령(법 §28, 영 §9)상 이용자 등과의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신청서상 분쟁 처리·조정 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정기간 중 발생 가능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신청서상 지정기간 중 금융소비자 피해·위험 예방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또는 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배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신청서상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 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 가능한 금융 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신청서상 지정기간 종료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위험 예방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처리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회사내 적절한 감독 및 통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신청서상 위험관리 기준·절차 방안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8**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① 심사 기준(법 §13④viii)**

-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없을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해당 금융서비스가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없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해당 금융서비스가 불건전 영업행위등 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없는지	신청서상 해당 금융서비스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위반 하지 않음을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9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① 심사 기준(법 §13④ix)

-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없을 것

② 주요 심사 내용

- ① 해당 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 ② 해당 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심사 내용	제출자료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	.해당 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에 반하지 않는지	.신청서상 규제 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목적 달성 未위반 기재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해당 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신청서상 규제특례 未 적용 규정 준수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참고 1

신청서 양식 (세척 별지 1)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첨부서류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 자격증
■ 첨부서류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3. 신청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구분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4.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 내용

1	해당 금융서비스의 명칭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3	해당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4	해당 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6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
7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 해당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것
-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①대출, ②은행, ③자본시장, ④보험, ⑤여신전문, ⑥데이터, ⑦전자금융/보안, ⑧P2P, ⑨기타(000)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표시하여 줄 것(예: 은행법규인 경우에는 “은행”으로, 신용정보법규인 경우에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표시)
-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의 경우, 해당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감독원 규정,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을 가급적 상세히 명시하고(예: 00법 제0조 제0항, 동법 시행령 제0조제0항), 관련 유권해석 사례 등도 가급적 명시할 것
- 상기 지정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기재할 것
- 각 주요 신청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4-1.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5. 신청 사유

1	해당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는 경우	()
2	금융관련법령을 해당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4	해당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

기재상의 주의

- 해당 난에 표시(√)할 것

■ 첨부서류

5-1.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6. 서비스의 지역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6-1. 서비스의 지역에 대한 증빙서류

7. 서비스의 혁신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7-1.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증빙서류

8. 소비자의 편익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8-1.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증빙서류

9.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 9-1.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증빙서류

10. 신청자의 영위 자격과 능력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 1.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 포함)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일까지의 소요 예상기간과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월별·연도별 계획 포함)

■ 첨부서류

- 10-1. 신청자의 영위 자격과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11. 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 1.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 11-1. 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사업계획에 대한 증빙서류

12.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②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 첨부서류

- 12-1.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증빙서류

13.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 13-1.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증빙서류

14.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14-1.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에 대한 증빙서류

15. 서비스 내용의 공개 여부

1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공개 여부 :
2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 :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동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신청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책 홍보 등 사유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략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첨부서류

15-1.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16.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16-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6-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전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①금융회사 등, ②「상법」상 회사”로 규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는 최소한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어야 할 것임

2.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금융혁신법은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는 것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 *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의무(§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및 준수 의무(§19), 이용자에 대한 위험고지 및 동의 수령의무(§20) 등
 -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다만, 다수 회사가 참여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수 회사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

3. 1개 회사가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1개의 회사가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지정 신청이 금융혁신법상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외국회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외국회사가 금융혁신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빙자료 제출이 있어야 할 것임

* (예시) 서비스 지역(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 등

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과정에서 실지조사 절차도 진행하는지?

-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는 금융당국이 인허가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혁신법에서는 금융당국의 실지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증빙자료 등 서류를 위주로 심사를 진행

- 다만, 금융당국이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자는 **동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함**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청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 금융혁신법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청 회사가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음**
-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청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

7.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통상적인 금융법상 인허가와 다른 점은?

- 금융규제 샌드박스과 통상적인 금융법상 인허가 제도는 **제도 취지, 심사 요건, 부가조건, 유효기간** 등에서 차이점이 있음

구 분	샌드박스 제도(Principle-based)	통상적 인허가(Rule-based)
제도취지	· 테스트 성격 강함	· 정식적인 절차
심사요건	· 법상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 엄격하고 기속적 요건 → 엄격심사
부가조건	· 다양한 부가조건을 비교적 자유롭게 부가 가능	·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친 조건 부가 곤란
기한유무	· 제한된 기간(2+2년) 동안 규제 특례 부여	· 통상적 인허가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에도 “예비지정”과 “본지정”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 다른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절차는 “예비 인허가” 단계와 “인허가”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 금융혁신법에서는 예비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예비지정 단계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 참고로, 금융혁신법의 시행일(19.4.1일) 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전신청(1.21일~1.31일)을 접수받았으나,
 - 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의 선정 절차이고, 예비지정 절차는 아니었음

9. 다수 회사의 유사한 유형의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도 모두 지정할 것인지?

- 다수 회사가 신청한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하나,
 - 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내용·방법·형태 등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 여부 결정

1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의 제출 이후 보완 가능한지?

- 금융당국은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신청서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 다만, 신청서 등의 보완기간 만큼, 금융당국의 심사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유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p>	<p>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p>	<p>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나. 「기술보증기금법」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라. 「무역보험법」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바. 「신용보증기금법」 사. 「예금자보호법」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p> <p>2. 법 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p> <p>3. 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p> <p>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p>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2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p>	<p>하 “금융 및 보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 3.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그 밖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p>제2조(금융업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2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p> <p>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p> <p>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p> <p>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p> <p>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p> <p>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p> <p>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p> <p>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p>		<p>(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은행</p> <p>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p> <p>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p> <p>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p> <p>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p> <p>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p> <p>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 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10. 그 밖에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 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2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p> <p>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p> <p>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p> <p>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p> <p>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p> <p>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p>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p>		<p>첨부하여야 한다.</p> <p>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p>
<p>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p>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p> <p>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되어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야 한다.</p>		
<p>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용서비스의 운영 성과</p> <p>3.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p> <p>4.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p>		
<p>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p> <p>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성 등에 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p> <p>③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에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p> <p>④ 제1항의 중지명령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는 금융소비자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지정의 일부로 간주된다.</p>		
<p>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p>		
<p>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p> <p>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p>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 	<p>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p> <p>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p> <p>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p> <p>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p> <p>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p> <p>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p> <p>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p> <p>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p> <p>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p> <p>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p> <p>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p>		<p>제4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p> <p>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p> <p>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⑥ 그 밖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p>	<p>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2.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p> <p>⑦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p> <p>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6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회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
		<p>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제7조(서면의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8조(안건의 비공개)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
		<p>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지정 신청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한 경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의 사유로 안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p> <p>제9조(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검토, 예산의 원활한 집행</p>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p>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p>	<p>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p>
		<p>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전문가 지원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 지원단은 법률분야,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각 분야별 영향 등에 대해 분야별 지원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11조(실무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각각 “금융위원회 실무단” 및 “금융감독원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p>
		<p>③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3조(실무단)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감독총괄국장, 핀테크혁신실장, 제4항 및 제5항의 협의사항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③ 핀테크혁신실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제14조(심사기간)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p>		<p>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p> <p>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p> <p>제12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15조(의견청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해당 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하여금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토론회, 공청회</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p> <p>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p>		
<p>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p> <p>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p>		
<p>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 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p>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2. 중간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p>제13조(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이용자의 자금세탁·조세포탈·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3. 최종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p> <p>③ 제2항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2.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3.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④ 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p>		<p>제1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 사항)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2. 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 및 제5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p> <p>1.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판단할 것</p> <p>2.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p> <p>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p>		
제6장 보칙		
<p>제27조(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배상방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p>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다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p>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 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p> <p>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35조(권한 등의 위탁)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별표 1] <u>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u></p> <p>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시 조건에 대한 심사</p> <p>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p>의 지정 사항 및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p> <p>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의 미비사항 등에 대한 보완 요구</p> <p>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p> <p>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검토</p> <p>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p> <p>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사항 및 조건의 변경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p> <p>8.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와의 협의 및 서비스 재개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p> <p>9.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div>
	10.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1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1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 접수 14.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명령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1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 신청이 금융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16.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 여부에 대한 심사 17.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보호를 위한 상대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p>에 대한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 여부에 대한 심사</p> <p>18.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p> <p>19.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회신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p> <p>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p> <p>21.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 보고의 접수</p> <p>22.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혁신금융사업자의 배상방안 관련 협의</p>	